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437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보험료율 인상 및 연령대 구간별 인상속도 차등화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8
다. 관계 기관 의견	12

I. 개요

1.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43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수영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11. 11.
- (3) 회 부 일 : 2024. 11.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되었으나, 급여 보장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더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도 2023년 제5차 재정 계산에 서는 2055년으로 제4차 재정 계산 결과에 비해 2년이나 앞당겨지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하여 50대의 경우 1년에 1%p씩, 40대의 경우 1년에 0.5%p씩, 30대의 경우 1년에 0.33%p씩, 20대의 경우 1년에 0.25%p씩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보험료율 인상 및 연령대 구간별 인상속도 차등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출생연도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인상속도를 매년 0.25~1.0%p의 범위에서 차등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② (생략)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u>1천분의 45</u>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u>1천분의 90</u> 으로 한다. ⑤ (생략)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1천분의 65</u> -----. ④ ----- ----- ----- ----- <u>1천분의 130</u>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적용례) ① 1965년생부터 1974년

생까지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은 1천분의 50
2. 2026년은 1천분의 55
3. 2027년은 1천분의 60

② 1975년생부터 1984년생까지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1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은 1만분의 475
2. 2026년은 1만분의 500
3. 2027년은 1만분의 525
4. 2028년은 1만분의 550
5. 2029년은 1만분의 575
6. 2030년은 1만분의 600
7. 2031년은 1만분의 625

③ 1985년생부터 1994년생까지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5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은 10만분의 4,665
2. 2026년은 10만분의 4,830
3. 2027년은 10만분의 4,995
4. 2028년은 10만분의 5,160
5. 2029년은 10만분의 5,325
6. 2030년은 10만분의 5,490
7. 2031년은 10만분의 5,655
8. 2032년은 10만분의 5,820
9. 2033년은 10만분의 5,985
10. 2034년은 10만분의 6,150
11. 2035년은 10만분의 6,315

④ 1995년생부터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9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은 10만분의 4,625
2. 2026년은 10만분의 4,750
3. 2027년은 10만분의 4,875
4. 2028년은 10만분의 5,000
5. 2029년은 10만분의 5,125
6. 2030년은 10만분의 5,250
7. 2031년은 10만분의 5,375
8. 2032년은 10만분의 5,500

9. 2033년은 10만분의 5,625
10. 2034년은 10만분의 5,750
11. 2035년은 10만분의 5,875
12. 2036년은 10만분의 6,000
13. 2037년은 10만분의 6,125
14. 2038년은 10만분의 6,250
15. 2039년은 10만분의 6,375

제3조(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적용례) ① 196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의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은 1천분의 100
2. 2026년은 1천분의 110
3. 2027년은 1천분의 120

② 1975년생부터 1984년생까지의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1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은 1천분의 95
2. 2026년은 1천분의 100
3. 2027년은 1천분의 105
4. 2028년은 1천분의 110

5. 2029년은 1천분의 115

6. 2030년은 1천분의 120

7. 2031년은 1천분의 125

③ 1985년생부터 1994년생까지의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5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은 1만분의 933

2. 2026년은 1만분의 966

3. 2027년은 1만분의 999

4. 2028년은 1만분의 1,032

5. 2029년은 1만분의 1,065

6. 2030년은 1만분의 1,098

7. 2031년은 1만분의 1,131

8. 2032년은 1만분의 1,164

9. 2033년은 1만분의 1,197

10. 2034년은 1만분의 1,230

11. 2035년은 1만분의 1,263

④ 1995년생부터의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9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은 1만분의 925

2. 2026년은 1만분의 950
3. 2027년은 1만분의 975
4. 2028년은 1만분의 1,000
5. 2029년은 1만분의 1,025
6. 2030년은 1만분의 1,050
7. 2031년은 1만분의 1,075
8. 2032년은 1만분의 1,100
9. 2033년은 1만분의 1,125
10. 2034년은 1만분의 1,150
11. 2035년은 1만분의 1,175
12. 2036년은 1만분의 1,200
13. 2037년은 1만분의 1,225
14. 2038년은 1만분의 1,250
15. 2039년은 1만분의 1,275

제4조(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적용례)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각각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25년은 1천분의 100
2. 2026년은 1천분의 110
3. 2027년은 1천분의 120

나. 검토의견

-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기준소득월액¹⁾ 대비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비율로,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율은 9%(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임.
- 그런데 정부가 2023년 3월 발표한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2041년에 적자 전환 후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된 측면이 있음.

< 제5차 재정계산(2023) 주요 결과 >

구분	추계기간	최대기금	수지적자	기금소진 (적립기금 규모)
제5차 재정계산 (2023년)	2023년~2093년	1,755조원 (2040년)	2041년	2055년 (△47조원)
제4차 재정계산 (2018년)	2018년~2088년	1,778조원 (2041년)	2042년	2057년 (△124조원)

자료: 보건복지부

- 이에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4년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의 출생연도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그 인상속도를 매년 0.25%p~1%p가 되도록 차등화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보험료율을 매년 1%p씩 인상하려는 것으로,

1)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적자 전환 시점과 소진 시점을 각각 2050년과 2068년으로 전망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포함된 기금투자수익률 연평균 5.5% 달성 방안을 전제로 개정안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적자 전환 시점과 소진 시점을 각각 2055년과 2073년으로 추계하였음.

< 개정안에 따른 사업장·지역·임의가입자 보험료율 인상 스케줄 >

(단위: %)

구분	현행	개정안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이후
[1구간] '65~'74년생	9.0	10.0	11.0	12.0	13.0												
[2구간] '75~'84년생		9.5	10.0	10.5	11.0	11.5	12.0	12.5	13.0								
[3구간] '85~'94년생		9.33	9.66	9.99	10.32	10.65	10.98	11.31	11.64	11.97	12.30	12.63	13.0				
[4구간] '95년 이후 출생		9.25	9.5	9.75	10.0	10.25	10.5	10.75	11.0	11.25	11.5	11.75	12.0	12.25	12.5	12.75	13.0

주: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2025년에 10%, 2026년에 11%, 2027년에 12%를 각각 적용한 다음 2028년부터 13% 적용함

- (1구간: 1965~1974년생)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1%p씩 인상하여 2028년부터 13%가 적용되도록 함.
- (2구간: 1975~1984년생)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하여 2032년부터 13%가 적용되도록 함.
- (3구간: 1985~1994년생)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33%p씩 인상(단, 2036년에는 전년 대비 0.34%p 인상)하여 2036년부터 13%가 적용되도록 함.

- (4구간: 1995년 이후 출생)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25%p 씩 인상하여 2040년부터 13%가 적용되도록 함.

□ 개정안과 같이 사업장·지역·임의가입자의 출생연도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차등화하게 되면 2007년 이후 명목소득대체율이 매년 0.5%p 인하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연령대가 단기간 내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게 되어 세대 간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다만, 사회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 등 경제적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가 일반적인데, 가입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것이 사회보험제도의 원칙에 부합하는지가 논의될 필요가 있고,

각 구간의 경계에서 출생일 하루 차이로 같은 시점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최소 0.08%p('25년도 3구간-4구간)에서 최대 2.0%p('28년도 1구간-2구간)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각 구간 경계의 말일 출생자(개정안의 경우 1974년·1984년·1994년의 12월 31일 출생자)가 바로 그 익일 출생한 각 구간 경계의 초일 출생자보다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59세) 도달까지의 기간이 하루 더 짧음에도 생애 보험료 부담은 140만원가량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참고로, 정부는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되 연령대별로 인상속도를 차등화²⁾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2024년 수준(42%)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아울러 한정애의원(의안번호 제1250호), 주호영의원(의안번호 제4625호), 김선민의원(의안번호 제4830호), 김남희의원(의안번호 제5233호), 이수진의원(의안번호 제5785호) 및 전진숙의원(의안번호 제6006호)이 각각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6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들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22대 국회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발의 현황 >

구분	보험료율	명목소득대체율
한정애의원안 (제1250호)	13% (매년 0.5%p씩 8년간 인상)	45% (일시 인상)
주호영의원안 (제4625호)	13% (매년 0.5%p씩 8년간 인상)	현행 유지
김선민의원안 (제4830호)	13% (매년 0.5%p씩 8년간 인상)	50% (매년 0.5%p씩 16년간 인상)
김남희의원안 (제5233호)	13% (매년 0.3%p씩 13년간 인상)	50% (일시 인상)
박수영의원안 (제5437호)	13% (출생연도별 인상속도 차등화)	현행 유지
이수진의원안 (제5785호)	13% (매년 0.5%p씩 8년간 인상)	45% (일시 인상)
전진숙의원안 (제6006호)	13% (매년 0.3%p씩 13년간 인상)	50% (매년 0.5%p씩 16년간 인상)

2) 정부는 20대는 16년간, 30대는 12년간, 40대는 8년간, 50대는 4년간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동의하나, 보험료율 수준의 결정은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 논의와 연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